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역안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하여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수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보험업법규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 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체를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음

-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하여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수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분야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이하 ‘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투자주체 활용정도	고객(자문형)	금융회사(일임형)
RA를 Back office에서 활용	· (1단계) 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 (2단계) 운용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
RA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	· (3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 (4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자료: 금융위원회(2016. 3. 25),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RA는 후선에서 간접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하였음(〈표 1〉 1단계 및 2단계)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됨¹⁾

- 사람이 아닌 RA는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람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는 정도만 가능했던 것임

- 그런데 2017년 5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표 1〉 3단계 및 4단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됨²⁾

■ 향후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³⁾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관련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호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위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⁴⁾
- 인공지능은 위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임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조항이 없었음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해 분석할 것
- 해킹,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 등을 갖출 것
-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나 종목에 집중되지 않을 것
- 매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 분석 후 투자자문의 내용이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할 것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 (주)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3) 보험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모집뿐만 아니라 상품설계, 언더라이팅 등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함

4)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그 밖에도,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 우선, 보험모집종사자⁵⁾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자체가 어떠한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보험모집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하는 정도라면,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임
 - 통신수단이나 사이버물 등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행위 규제나 세부요건 규제(예컨대 IT 보안 관련 사항)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겠음

■ 단지 인공지능의 기능,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사람이 보험모집 행위를 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험업법 제83조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겐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종사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등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임
 - 특히 이 부분은 단지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이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책임 소재 등의 이슈와 함께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방안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 등의 보험모집 위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⁶⁾ 또는 그 하위 규정

5)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모집종사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음

6)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개정을 통하여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9조 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둘 수 있겠음⁷⁾
- 보험회사 외에 보험대리점 등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 제99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⁸⁾
- 아울러,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행위 규제나 세부 요건 규제(예컨대 IT 보안 관련 사항)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음

-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임⁹⁾ [kiri](#)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7)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 또는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8) 보험회사의 모집 위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과는 달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위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서는 별도로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만약 인공지능에 대한 모집 위탁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9) 참고로 최근 EU의회에서는 AI와 로봇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로봇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2017년 1월 12일), 이에 의하면 향후 로봇 관련 입법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정교화된 자율 로봇(the most sophisticated autonomous robot)에게는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59.f)항)